K-Cash 가맹점 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7. 4. 21

2.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10조(손실부담 및 면책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순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. 1.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. 법인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	제10조(손해배상 및 면책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은 법인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.	조 명칭 변경 (표준약관 적용) 호 삭제에 따른 내용 변경 (표준약관 적용)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